

# 윤리경영규정

제 정 : 2005.10.16  
1차개정 : 2007.11. 6  
2차개정 : 2010.10.29  
3차개정 : 2016.10. 7  
4차개정 : 2022. 9. 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향상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정관,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 2 장 추진조직

### 제1절 윤리경영위원회

**제3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으며, 사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1. 사장
  2. 본부장
-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주요 윤리경영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정책적 권고사항 등에 대한 심의
  4. 윤리경영실무위원회에서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안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재적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윤리경영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윤리경영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윤리경영담당 본부장을 의장으로 하여 다음 각 호를 구성원으로 한다.

1.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2. 인사담당 부서장
3. 운영리스크담당 부서장
4. 준법감시담당 부서장
5. 감사담당 부서장
6. 실무위원회 의장이 선임한 2인 이내 부서장
7. 실무위원회 의장이 선임한 2인 이내 외부위원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안건 중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2.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 제2절 윤리경영실무위원 및 윤리경영담당부서

**제6조(윤리경영실무위원)** ① 윤리경영실무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함)은 각 부서장 및 국내외 지사장이며, 실무위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부서 및 지사의 윤리경영 실천관리 및 이행여부 점검
2. 윤리경영 실천과 관련된 소속 부서 및 지사 직원의 상담·지도

② 윤리경영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실무위원은 소속 부서 및 지사의 윤리경영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 중 윤리경영 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운영리스크관리관, 청탁방지담당관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된 부서장은 각 기능별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④ 윤리경영담당 부서장은 윤리경영 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총괄기획
2. 윤리경영규정 및 행동강령 제·개정 기획

⑤ 인사담당 부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2.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운영리스크담당 부서장은 운영리스크관리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리스크관리 기획
2. 운영리스크관리 점검 및 평가

⑦ 윤리경영담당 부서장은 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2.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신고의 접수, 조사 및 처리

⑧ 윤리경영담당 부서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7조(윤리경영담당부서)** ① 윤리경영담당관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담당부서를 두며, 윤리경영담당부서에는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총괄 기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윤리경영담당부서에는 윤리경영 실천 활동 및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과 관련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윤리경영담당부서의 직원)** ① 윤리경영담당부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임명한다.

1. 윤리경영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도덕성을 겸비한 자
2. 윤리경영 업무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인사담당 부서장은 윤리경영담당부서 직원의 임명 또는 이동시 사전에 윤리경영담당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윤리경영담당관은 윤리경영담당부서 직원의 윤리경영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외교육 등을 포함한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윤리경영담당부서 직원은 재직 중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윤리경영담당부서 직원은 윤리경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3절 윤리경영 읍부즈만

**제9조(윤리경영 읍부즈만 위촉)**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윤리경영 읍부즈만(이하 “읍부즈만”이라 함)을 외부인사 4인 이내에서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읍부즈만은 공사의 윤리 및 투명경영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다.

③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0조(읍부즈만 운영협의회)** ① 읍부즈만의 활동사항에 대한 협의·결정을 위하여 읍부즈만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읍부즈만 운영협의회는 읍부즈만과 공사 윤리경영 및 감사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세부사항)** 읍부즈만의 위촉, 권한 및 읍부즈만 운영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 장 제 도

## 제1절 윤리현장 및 행동강령

제12조(윤리현장) 공사 임직원이 추구하는 기본가치를 반영하여 윤리현장을 별지와 같이 수립한다.

제13조(행동강령) ① 사장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4조(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임직원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2절 이해충돌 방지제도

제15조(이해충돌 방지제도) ① 공사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고절차 및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요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6조(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3절 경영공시

제17조(공시제도) 공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시내용) 공시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공시항목과 기준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19조(운영) 경영공시담당 부서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제고를 위하여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 제4절 외부회계감사

제20조(외부회계감사 실시) 사장은 공사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공사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한다.

제21조(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① 외부회계감사 담당부서장은 평가항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정한 감사인 선임에 노력한다.

② 외부회계감사 담당부서장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권한 및 의무 등을 명시하여 외부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공사 및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는 동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인은 동 규정에서 정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인의 직무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이들을 보조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절 부조리신고

**제25조(부조리신고센터)** 감사담당 부서장은 내부직원 및 외부고객의 공사 임직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 부서 내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26조(제보자의 보호)** 부조리신고센터는 부조리신고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접수 및 조사)** ① 부조리신고센터는 기업윤리와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부조리신고센터는 접수된 고충이나 제보 및 고발 사안에 대하여 15일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
2. 사회단체로부터 기업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정부 당국으로부터 기업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4. 대중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기업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경우
5. 중대한 갑질,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조직문화가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제28조(조사결과 처리)** 감사담당 부서장은 감사규정, 민원처리요강 등을 준용하여 조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입증책임 및 징계감면)** ① 제보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입증책임은 제보자에게 있다.

② 공사의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이에 대한 사실을 부조리신고센터에 제보 또는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절 운영리스크관리

**제30조(운영리스크관리)** ① 운영리스크관리관은 부적절한 내부의 절차, 임직원, 시스템, 외부의 사건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리스크를 관리한다.

② 운영리스크관리관은 운영리스크 관리대상 및 관리절차 등을 정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제7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제31조(윤리경영 홈페이지)** ① 공사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 내에 윤리경영 전담 코너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설치한다.

② 주요내용은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부조리신고센터, 윤리경영 자료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절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

**제32조(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 ① 공사는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임원(비상임 제외)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②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은 임원 및 본부장 직무청렴계약제의 적용대상 및 적용절차 등을 정한 요강을 운영한다.

## 제 4 장 사회공헌 등

**제33조(사회공헌)** ① 공사는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34조(환경보호)** ①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보호정책에 부응하여 전 임직원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 부 칙(제정)

이 규정은 2005.10.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이 규정은 2007.11.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

이 규정은 2010.10.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3)**

이 규정은 2016.10.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4)**

이 규정은 2022. 9.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 한국무역보험공사 윤리헌장

우리는 무역보험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공공기관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무역신용보험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경영과 적극행정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높은 청렴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